서울특별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경영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1861

발의년월일 : 2020년 8월 12일
발 의 자 : 김경영·서윤기·이영실·
김생환·송재혁·박기재·
봉양순·김기덕·이현찬·
우형찬·최 선·김춘례 의원(12명)

1. 제안이유

○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점자·음성변환용코드' 용어를 다양한 편의제공 수단을 포괄할 수 있는 '인쇄물 접근성바코드'란 용어로 변경하여 그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점자·음성변환용코드'를 '인쇄물 접근성바코드'로 변경함. (안 제4조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참조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점자자료, 점자・음성변환용코드”를 “점자자료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책무) ① (생 략) ② 시장은 의사소통장애인에게 보완대체의사소통 상징체계, 단말기 및 프로그램, 주변기기, 의사소통 조력인, 한국 수어 통역, 문자통역(속기), 점자자료, 점자·음성변환용코드가 삽입된 자료, 자막, 큰 문자자료, 화면낭독·확대프로그램, 보청기기, 무지점자단말기,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를 포함한 각종 장애인 보조기기 등의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생 략)	제4조(책무)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점자자료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 ---------- ---------- ---------- ---------- ---------- ---------- ---------- -----. ③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시장의 책무) 제2항에서 점자·음성변환용코드를 인쇄물 접근성바코드로 개정하여 다양한 편의제공 수단을 포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내용과 관련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대한 현황 파악 등이 어려워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움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가. 의안이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제3조제1항제2호)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승우
정책조사팀장 여차민
주 무 관 채소영
☏ 02-2180-7942
e-mail : liz1998@seoul.go.kr